

의안번호	2217831
의 퇴 인	이해민 의원
회 답 일	2026.9.3.
추 계 번 호	26B19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60%~100%에서 100%로 변경할 경우 재정변화는 수입증가분과 지출증가분으로 구성됨
- (수입증가분)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60%~100%에서 100%로 변경할 경우 수입증가분은 2028년 4,658억원, 2031년 5,128억원 등 2028년부터 2031년까지 개정안이 적용되는 4년간 총 1조 9,563억원(연평균 4,891억원)으로 추계됨
 - (지출증가분)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60%~100%에서 100%로 변경할 경우 지출증가분은 2028년 1,054억원, 2031년 1,160억원 등 2028년부터 2031년까지 개정안이 적용되는 4년간 총 4,426억원(연평균 1,107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변화: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안 제33조제3항)	수입증가분	—	4,658	4,810	4,967	5,128	19,563	4,891
	지출증가분	—	1,054	1,088	1,124	1,160	4,426	1,107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에 따라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5. 본 추계결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재정변화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로서 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고용에 대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증가분을 산출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제3항(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 및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3조제3항(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 개정안의 조항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감안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¹⁾을 적용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본 추계서는 행태변화에 따른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장래에 발생할 미고용인원, 구간별 부담기초액,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따라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담기초액의 부과 기준이 구체화 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변화할 수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공과금을 말함²⁾
 - **(제도개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의 고용으로 인해 소요되는 금액을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환산한 금액으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

(2026년 7월 기준, 단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최저임금상승률	2.9	3.7	3.3	3.3	3.3	3.3

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부담기초액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현행법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약 60%~100% 수준에서 결정됨³⁾

[표 2] 2026년 기준 부담기초액

구분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이상 ($i=1$, A)	1/2이상 3/4미만 ($i=2$, B)	1/4이상 1/2미만 ($i=3$, C)	1/4미만 ($i=4$, D)	장애인고용률 0% ($i=5$, E)
부담 기초액	1,295,000원 (A/E = 60.0%)	1,372,700원 (B/E = 63.6%)	1,554,000원 (C/E = 72.0%)	1,813,000원 (D/E = 84.0%)	2,156,880원 (월 최저임금액)

주: 1.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2.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

[표 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2021~2026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부담기초액	1,094,000원	1,149,000원	1,207,000원	1,237,000원	1,258,000원	1,295,000원

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 개정안은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임
 -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변화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인상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이하 “수입증가분”)과 사용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액(이하 “지출증가분”)으로 구성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 사업장 규모(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변화는 현시점에서 부과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이를 고려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가 변화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추계서는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을 인상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변화 중 수입증가분과 지출증가분에 대해 산출하며, 이때,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부담기초액과 현행 기준 부담기초액의 차이(이하 “부담기초액의 차이”)에 장애인고용률 구간별 의무고용률 대비 미고용인원(이하 “미고용인원”)을 적용하여 추산

- ① (수입증가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 수입⁴⁾에 계상되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수입증가분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범위가 상향 조정될 경우 법정부담금 수입액의 증가분임
-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니지만, 개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수입증가분을 산출
 - 참고로,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의 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장애인공무원 포함)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해야하며,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입 현황: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년	2025년
정부	공무원	49,195	53,987	72,016	136,858	156,932
	비공무원	9,013	6,283	7,813	8,485	12,931
공공기관		32,918	25,629	29,607	26,680	23,692
민간기업		676,484	677,789	720,145	723,343	692,667
합계		767,611	763,688	829,580	895,365	886,22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4) 사업코드: 59-593

② (지출증가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의 변화 중 지출증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증가분임

-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출증가분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발생 현황을 토대로 검토하며, 2026년 고용현황에 대해 발생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지출은 2027년 이루어지므로, 본 추계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시점을 고려하여 2026년 기준 부담기초액의 차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7년에 납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산
-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분할 납부하지 않고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그 부담금액의 3%를 할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⁵⁾
-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부칙에 따른 감면(교육감 50% 감면) 규정도 두고 있는데, 2016년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개정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교육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간 동 개정에 따른 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함⁶⁾
- 이후 2021년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종전에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로, 2024년 이후에는 ‘3.8%’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를 통해 교육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간 동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함⁷⁾

-
-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④ 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 6) 「법률 제1450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6항, 제33조제8항·제9항, 제3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 7)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

-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감면 규정(교육감 50% 감면, 일시납 3% 감면)에 따라 수입증가분과 지출증가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표 5]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년	2025년
정부	공무원	53,520	72,232	136,501	160,245	177,848
	비공무원	6,144	7,669	8,693	14,832	14,802
공공기관		26,478	34,891	27,985	25,395	21,661
민간기업		690,784	743,766	744,340	716,508	675,450
합계		776,926	858,559	917,519	916,981	889,76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③ (부담기초액의 차이) 추가재정소요의 산출 근거가 되는 부담기초액의 차이는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에서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부담기초액을 차감하여 산출

- (현행)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i=5$) 최저임금과 동일하므로 이 구간에 대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i=5$)를 제외한 장애인고용률이 1/2 이상 3/4 미만인 경우($i=2$)와 1/4 이상 1/2 미만인 경우($i=3$), 1/4 미만인 경우($i=4$) 등은 2026년 기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i=5$) 대비 부담기초액의 비중을 준용하여 산출
- (개정안)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부담기초액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표 6]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산출

장애인고용률 구간	현행	개정안
	최저임금 대비 부담기초액 비중	
$i=1$	60.0%	100.0%
$i=2$	63.6%	100.0%
$i=3$	72.0%	100.0%
$i=4$	84.0%	100.0%
$i=5$	100.0%	100.0%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7] 개정안에 따른 월 부담기초액 차이(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원)

구분	장애인고용률 구간	2027	2028	2029	2030	2031
현행 (A)	$i=1$	1,342,684	1,386,583	1,431,778	1,478,447	1,526,636
	$i=2$	1,423,245	1,469,778	1,517,685	1,567,154	1,618,235
	$i=3$	1,611,221	1,663,900	1,718,134	1,774,136	1,831,964
	$i=4$	1,879,758	1,941,216	2,004,490	2,069,826	2,137,291
	$i=5$	2,236,300	2,309,416	2,384,690	2,462,419	2,542,681
개정안(B)		2,236,300	2,309,416	2,384,690	2,462,419	2,542,681
차이 (C=B-A)	$i=1$	893,616	922,833	952,912	983,972	1,016,044
	$i=2$	813,055	839,638	867,005	895,265	924,446
	$i=3$	625,079	645,516	666,556	688,283	710,717
	$i=4$	356,542	368,199	380,201	392,593	405,390
	$i=5$	0	0	0	0	0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④ (미고용인원) 2025년 결산 기준 미고용인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될 경우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어 실제 미고용인원이 감소할 수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장애인 미고용인원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2025년 결산 기준 장애인 미고용인원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장래에 발생할 실제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의 채용 규모,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의 변동 등에 따라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된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에 따른 행태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8] 장애인 미고용인원 현황

(단위: 명)

장애인고용률 구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i=1$	680	386	564	7,722
$i=2$	4,392	460	458	15,979
$i=3$	5,652	119	347	10,797
$i=4$	0	0	34	3,747
$i=5$	3	4	102	20,391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2025년 12월 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나. 수입증가분

- 개정안에 따른 수입증가분은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에 따른 장애인고용기금 수입액 증가분으로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차이에 미고용인원을 적용하여 산출
 - 본 추계서는 납부 시점을 고려하여 2027년 기준 부담기초액의 차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28년에 납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산
 - (공무원)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차이×12개월×2025년 기준 공무원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9]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공무원):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i=1$	—	7,530	7,776	8,029	8,291
$i=2$	—	44,252	45,695	47,184	48,722
$i=3$	—	43,781	45,209	46,682	48,204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95,564	98,679	101,895	105,217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비공무원)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차이×12개월×2025년 기준 비공무원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0]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비공무원):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i=1$	—	4,275	4,414	4,558	4,706
$i=2$	—	4,635	4,786	4,942	5,103
$i=3$	—	922	952	983	1,015
$i=4$	—	0	0	0	0
$i=5$	—	0	0	0	0
합계	—	9,831	10,152	10,482	10,824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공기관)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차이×12개월×2025년 기준 공공기관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1]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공공기관):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i=1$	—	6,246	6,449	6,660	6,877
$i=2$	—	4,615	4,765	4,920	5,081
$i=3$	—	2,688	2,776	2,866	2,959
$i=4$	—	150	155	160	165
$i=5$	—	0	0	0	0
합계	—	13,699	14,145	14,606	15,082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민간기업)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차이×12개월×2025년 기준 민간기업의 구간별 장애인 미고용인원

[표 12]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민간기업):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i=1$	—	85,513	88,301	91,179	94,151
$i=2$	—	160,999	166,247	171,665	177,261
$i=3$	—	83,636	86,362	89,177	92,083
$i=4$	—	16,556	17,095	17,653	18,228
$i=5$	—	0	0	0	0
합계	—	346,704	358,004	369,673	381,723

주: 1. i 는 장애인고용률 구간($i=1$ 장애인고용률 3/4 이상, $i=2$ 1/2 이상 3/4 미만, $i=3$ 1/4 이상 1/2 미만, $i=4$ 1/4 미만, $i=5$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60%~10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증가분은 2028년 4,658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13]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수입증가분(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정부	—	1,054	1,088	1,124	1,160
공공기관	—	137	141	146	151
민간기업	—	3,467	3,580	3,697	3,817
합계	—	4,658	4,810	4,967	5,128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지출증가분

- 본 추계서의 지출증가분은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증가분”으로 개정안에 따른 부담기초액 차이에 미고용인원을 적용하여 산출

-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과 지출 사이의 시차와 추정, 환급, 오신고 등으로 인해 수입증가분과 지출증가분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과 지출 사이의 시차와 이로 인한 기회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60%~10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경우 발생하는 지출증가분은 2028년 1,054억원 등으로 추계됨

[표 14]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지출증가분(추정치):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	—	956	987	1,019	1,052
비공무원	—	98	102	105	108
합계	—	1,054	1,088	1,124	1,16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시행령에 따른 감면(일시납 3%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현행법에 따른 감면 규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이며, 주요 전제가 달라질 경우 실제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에서의 미고용인원은 2025년 결산 기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미고용인원의 규모에 따라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구간별 부담기초액의 설정,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따라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상향 조정되면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담기초액의 부과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고려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변화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